

이천시읍·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
'96. 4. 23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4월13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4월 19일 내무위원회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3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내무위원회(1996. 4. 22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가. 제안이유 : 면동간 경계조정으로 대월면 관할 구역중 단월리, 대포리, 고담리, 장록리 지역을 중리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 : 대월면 관할구역중 단월리, 대포리, 고담리, 장록리 지역을 삭제, 중리동 관할구역으로하고 명칭을 단월동, 대포동, 고담동, 장록동으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봉환)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이 1996년 3월28일 경기도 자치 제13120~836호 및 1996년 4월15일 내무부자치 13120~293호로 경기도지사 및 내무부장관의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대월면과 중리동간의 명칭 및 구역을 대월면 관할구역중 단월리, 대포리, 고담리, 장록리지역을 중리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명칭도 단월동, 대포동, 고담동, 장록동으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절차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